

2025년 청주시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지원 업무협약서

충청북도 청주시(이하 “시” 라 한다)와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 라 한다)는 청주시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지원사업(이하 “사업” 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1. 사 업 명 : 청주시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지원사업
2. 사업기간 : 2025. 1. 1. ~ 12. 31. (12개월)
3. 지원금액 : 금157,920,000원(금일억오천칠백구십이만원)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시” 가 “중앙회” 의 “사업” 추진을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의 성실의 원칙) “시” 와 “중앙회” 는 본 협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는데 있어 상호 의사를 존중하며, 신의 성실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공익추구, 비정치, 비영리의 원칙) “시” 와 “중앙회” 는 공익을 우선하여 사업을 추진하며, 당해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치적 활동이나 영리적 활동으로 오인받을 일체의 활동을 배제한다.

제4조(사업내용) 본 사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지원대상 : 사업장이 청주시에 소재한 연매출 3억원 이하 공제 신규 가입 소상공인
2. 지원규모 : 월 1만원 정액지원(최대 12만원)
3. 지원방식 : 매월 공제부금 납입 시마다 정액장려금 추가적립
4. 지원기간 : 가입일로부터 1년간

제5조(사업계획서) ① “중앙회” 는 본 협약 체결 후 14일 이내에 “시” 에 사업 추진계획서(이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중앙회” 는 부득이한 이유로 제1항의 사업계획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시”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 는 사업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항의 사업계획서를 승인하되, 필요한 경우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사업의 수행) ① “중양회”는 제5조에 따른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중양회”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청주시의 조례 및 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지도감독) ① “시”는 이 사업과 관련한 “중양회”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② “시”는 필요한 경우에 사업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직원 또는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중양회”의 업무처리 또는 관련 서류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중양회”는 이에 성실하게 따라야 한다.

③ “시”는 사업과 관련한 “중양회”의 사무처리가 관계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양회”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보조금 교부 및 사용) ① “시”는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이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이하 “사업비”라 한다)를 “중양회”에게 교부한다.

② “중양회”가 제1항에 따라 “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서면으로 “시”에 청구한다.

③ “중양회”는 사업비를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청주시재무회계규칙 등 관계 법규에 적합하게 관리·집행하여야 한다.

④ “중양회”는 사업비를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고유 재산과 분리하여야 하고, 회계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⑤ “중양회”는 “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을 공제 가입 소상공인에 대한 가입 장려금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⑥ “중양회”는 보조금 집행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용내역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후 정산하여야 한다.

⑦ “시”는 상기 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추진 및 사업비 집행내역 증빙서류 등에 이상이 있는 경우 “중양회”에게 이의 보완·개선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중양회”는 이를 따라야 한다.

⑧ “중양회”는 사업에 대한 최종 정산을 완료한 결과 집행잔액과 예금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시”에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⑨ “시”는 “중양회”의 보조금사용에 관한 금융기관의 자료를 획득, 관리할 수 있으며 “중양회”는 이에 동의한다.

⑩ “중양회”는 가입자의 폐업, 타지역으로 사업장 이전 등 장려금 지원 철회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철회 사유 발생일부터 적립된 청주시 장려금 및 이에 대한 이자는 공제금 지급에서 제외하고, 해당 장려금 및 이에 대한 이자는 “시”에 반납한다.



제9조(보조금 반환) “중양회”가 협약된 사업을 추진할 수 없을 경우, 즉시 이 사실을 “시”에 통보하여야 하며 사업비 전액 또는 잔여사업비에 예금 이자를 포함하여 정산·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협약의 해지) ① “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협약을 해지하고 사업을 중단시키거나 사업계획의 축소·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1. “중양회”가 협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경우
2. “중양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시”의 시정조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시”가 인정하는 경우
3. “시”에 공익상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② “시”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 예정일 1개월 전까지 그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써 상대방에게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시”는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로 인하여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그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써 “중양회”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로 인하여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 “중양회”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등을 “시”에 청구할 수 없다.

제11조(결과보고 및 정산검사) ① “중양회”는 협약이 해지되었거나 사업기간이 종료되었을 경우 협약해지 또는 사업기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에 대한 결과보고서(실적 및 정산결과 포함)를 작성하여 “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결과보고서에는 그 사업에 들어간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시”는 “중양회”가 제출한 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정산검사를 실시한다.

제12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① “중앙회”는 본 협약에 관한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하거나 또는 제한물권을 설정할 수 없으며 제3자에게 재위탁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정보공개의 동의) ① “중앙회”는 보조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시”에 제출한 자료 일체를 “시”의 필요에 따라 시민에게 공개함에 동의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영업비밀 등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중앙회”는 “시”가 자료를 공개하기 전에 “중앙회”와 협의할 것을 조건으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14조(상호협력) “시”와 “중앙회”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산하기관 및 홍보물을 통해 노란우산공제 가입 및 홍보를 위해 적극 협력한다.

제15조(기타)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시”와 “중앙회”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16조(협약의 효력) 본 협약은 사업기간 내에 효력이 있다. 다만, 사업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건·사고로 인한 판결 및 배상 등이 종결될 때까지, 시가 교부한 보조금에 대한 정산이 완료되지 아니 하는 경우 그 정산이 완료되는 때까지, 지도·감독 또는 감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도·감독 또는 감사가 종료될 때까지 관계된 규정에 한하여 그 효력이 있다.

이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양 당사자가 서명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5년 1월 일

청 주



대표자 : 시장 이 범 석

주소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69번길38

중소기업중앙회



대표자 : 회장 김 기 문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협약서

사업명

산업단지 중소기업 노무·안전관리 지원사업

제1조(목적) 청주시와 (사)청주산업단지관리공단(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 간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하기 위해 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2조(지원기간) ①지원기간은 사업 선정 후부터 2025. 12. 31.까지로 한다.

제3조(당사자의 의무) ①'청주시'는 '수행기관'이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수행기관은 사업운영과 관련하여 '자치단체'의 요청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수행기관'은 사업계획서에 따라 관련 사업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고, '청주시'의 사업계획에 대한 지도·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비의 지원) ①'청주시'는 '수행기관'의 요청에 따라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수행에 소요되는 사업비(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지원한다.

사 업 명	도비보조금	시 부담금
산업단지 중소기업 노무·안전관리 지원사업	50,020천원	6,135천원

※사업비는 선정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②보조금은 '수행기관'이 신청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한다.

③ '청주시'는 수행기관의 사업추진 성과 등을 감안하여 2회에 걸쳐 나누어 지급할 수 있다.

제5조(보조금의 사용 등)'수행기관'은 보조금을 당초 사업계획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제6조(보조금의 관리) ①'수행기관'은 보조금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지방보조금 규정 준용)

② '수행기관'은 보조금의 지출과 관련하여 일반 회계 관행에 따라 기록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남겨야 하며, 사업수행에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내용 등의 변경) '수행기관'은 사업 수행 중에 사업내용 및 예산(항목간 변경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주시'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지원의 취소) '수행기관'이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여 사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



제9조(중도해지 등의 통보) '수행기관'은 지원기간 종료 전에 사업의 중도해지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을 5일 이내에 '청주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보조금의 반환 및 환수)

- ① '수행기관'은 '청주시'의 승인 없이 보조금을 최초 사업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부당하게 사용한 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 ② '자치단체'의 사업추진 중에 일부사업을 중단·폐지하거나, 자체사정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중단 또는 폐지시점을 기준으로 사용하지 않은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 ③ '수행기관'의 사업종료 후에 미집행된 보조금이 있는 경우 '청주시'는 이를 환수한다.
- ④ 수행기관이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 받거나, 보조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법령·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을 위반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청주시는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한다.
- ⑤ 청주시에서는 수행기관이 보조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거나,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하며, 동법 제32조에 의거 보조사업 수행을 배제한다.
- ⑥ 그 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장 '지방보조금의 반환과 제재'에 따른다.

제11조(보조금의 정산보고서 제출) ①'수행기관'은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를 확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수행기관'은 정산보고서 제출에 따라 '청주시'가 추가 자료를 요청할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제재) '수행기관'이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시행지침」상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된다.

제13조(점검·평가)①'청주시'는 '수행기관'에 대해 사업 이행실적 파악, 기타 관리 감독을 위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수행기관'은 이에 대해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청주시'는 사업의 진행상황 파악, 지도·감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현장을 방문하거나 관련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행기관'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청주시'는 사업의 진행상황 파악, 지도·감독 등을 위하여 '수행기관'을 1분기, 3분기 자율점검하며, '수행기관'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4조(보고의무) ①수행기관은 사업수행과정에서 사업내용 및 예산 등에 있어 중요변경사항(사업내용 변경, 예산항목간 변경 등)이 발생할 경우 즉시 '청주시'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수행기관은 '충청북도'와 '청주시'에게 사업실적에 대한 최종 보고(연구사업의 경우 연구결과 요약분 포함)를 사업이 종료한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조금에 대한 지출보고서 및 관련 지출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5조(연구결과의 발표 등) ①연구사업의 경우 본 연구사업 수행과정에서 획득한 관련 통계자료 및 연구결과의 발표는 '청주시', '수행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한다.

②본 연구약정에 의하여 수행된 연구사업의 결과물 및 획득한 관련통계자료에 대한 저작 재산권 일체는 '청주시'가 소유한다.

제16조(준용) 이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조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회계예규, 지침 등 관련 법규와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본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청주시'와 '수행기관'이 기명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5년 2월 13일

(자치단체) 청 주 시

시 장 이 범 석 (인)



(수행기관) (사)청주산업단지관리공단이사장

현 일 선 (인)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협약서

사업명

K-뷰티 맞춤형 화장품 전문인력 양성

제1조(목적) 청주시와 서원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 간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해 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2조(지원기간) ①지원기간은 사업 선정 후부터 2025. 12. 31.까지로 한다.

제3조(당사자의 의무) ①'청주시'는 '수행기관'이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수행기관은 사업운영과 관련하여 '자치단체'의 요청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수행기관'은 사업계획서에 따라 관련 사업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고, '청주시'의 사업계획에 대한 지도·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비의 지원) ①'청주시'는 '수행기관'의 요청에 따라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수행에 소요되는 사업비(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지원한다.

사 업 명	도비보조금	시 부담금
K-뷰티 맞춤형 화장품 전문인력 양성	160,000천원	40,000천원

※사업비는 선정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②보조금은 '수행기관'이 신청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한다.

③ '청주시'는 수행기관의 사업추진 성과 등을 감안하여 2회에 걸쳐 나누어 지급할 수 있다.

제5조(보조금의 사용 등)'수행기관'은 보조금을 당초 사업계획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제6조(보조금의 관리) ①'수행기관'은 보조금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지방보조금 규정 준용)

② '수행기관'은 보조금의 지출과 관련하여 일반 회계 관행에 따라 기록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남겨야 하며, 사업수행에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내용 등의 변경) '수행기관'은 사업 수행 중에 사업내용 및 예산(항목간 변경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주시'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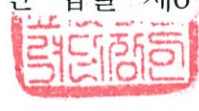
제8조(지원의 취소) '수행기관'이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여 사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



제9조(중도해지 등의 통보) '수행기관'은 지원기간 종료 전에 사업의 중도해지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을 5일 이내에 '청주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보조금의 반환 및 환수)

- ① '수행기관'은 '청주시'의 승인 없이 보조금을 최초 사업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부당하게 사용한 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 ② '자치단체'의 사업추진 중에 일부사업을 중단·폐지하거나, 자체사정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중단 또는 폐지시점을 기준으로 사용하지 않은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 ③ '수행기관'의 사업종료 후에 미집행된 보조금이 있는 경우 '청주시'는 이를 환수한다.
- ④ 수행기관이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 받거나, 보조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법령·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을 위반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청주시는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한다.
- ⑤ 청주시에서는 수행기관이 보조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거나,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하며, 동법 제32조에 의거 보조사업 수행을 배제한다
- ⑥ 그 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장 '지방보조금의 반환과 제재'에 따른다.



제11조(보조금의 정산보고서 제출) ① '수행기관'은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를 확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행기관'은 정산보고서 제출에 따라 '청주시'가 추가 자료를 요청할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제재) '수행기관'이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시행지침」상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된다.

제13조(점검·평가) ① '청주시'는 '수행기관'에 대해 사업 이행실적 파악, 기타 관리 감독을 위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수행기관'은 이에 대해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청주시'는 사업의 진행상황 파악, 지도·감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현장을 방문하거나 관련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행기관'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청주시'는 사업의 진행상황 파악, 지도·감독 등을 위하여 '수행기관'을 1분기, 3분기 자율점검하며, '수행기관'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4조(보고의무) ① '수행기관'은 사업수행과정에서 사업내용 및 예산 등에 있어 중요변경사항(사업내용 변경, 예산항목간 변경 등)이 발생할 경우 즉시 '청주시'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수행기관은 '충청북도'와 '청주시'에게 사업실적에 대한 최종 보고(연구사업의 경우 연구결과 요약분 포함)를 사업이 종료한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조금에 대한 지출보고서 및 관련 지출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5조(연구결과의 발표 등) ① 연구사업의 경우 본 연구사업 수행과정에서 획득한 관련 통계자료 및 연구결과의 발표는 '청주시', '수행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한다.

② 본 연구약정에 의하여 수행된 연구사업의 결과물 및 획득한 관련통계자료에 대한 저작 재산권 일체는 '청주시'가 소유한다.

제16조(준용) 이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조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회계예규, 지침 등 관련 법규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본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청주시'와 '수행기관'이 기명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상의인

2025년 2월 일

(자치단체) 청주시

시 장 이 범 석 (인)



(수행기관) 서원대학교 산학협력단

단 장 김 영 미 (인)



2025년 혁신기술 제조창업 공유공장 구축 표준협약서 (3차년도)

- 사 업 명 : 혁신기술 제조창업 공유공장 구축
- 협약기간 : 2025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12개월)
- 구축기간 : 2023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48개월)
- 협약금액 (국 고 보 조 금) 금 구십억원 (9,000,000,000원)
(대응자금-현금) 금 사십구억원 (4,900,000,000원)
(대응자금-현물) 금 이억오천만원 (250,000,000원)
- 협약당사자

전 담 기 관 : 창업진흥원

주 관 기 관 : (재)충북테크노파크

협 력 기 관 : (재)FITI 시험연구원

(재)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충청북도

청주시

원	장	직무대행	(직인생략)
최	열	수	
원	원	장	(직인생략)
오		근	
원		장	(직인생략)
윤	주	경	
센	장	무	(직인생략)
터	직	대	
장	무	행	(직인생략)
홍	성	표	
도	지	사	(직인생략)
김	영	환	
시		장	
이	범	장	(직인생략)
		석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혁신기술 제조창업 공유공장 구축」(이하 “구축사업”이라 한다)에 참여하는 “전담기관”, “주관기관”, “협력기관”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협약목적) 본 협약은 주관기관 및 협력기관이 전담기관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이하 ‘사업계획서’라고 한다)에 따라 구축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혁신기술 제조창업 공유공장을 성공적으로 구축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제2조 (사업수행의 성실의무) ① 주관기관 및 협력기관은 협약서, 사업계획서 및 사업비 사용계획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총괄기관’이라 한다) 및 전담기관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주관기관 및 협력기관은 협약기간 동안 혁신기술 제조창업 공유공장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물적·인적 지원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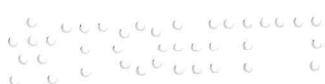
제3조 (사업비 교부 및 관리) ① 전담기관은 국고보조금을, 협력기관은 대응자금을 주관기관에게 교부하며 각 사업비의 지급 시기와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전담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구축사업의 연차별 사업비 구성은 다음과 같다. 단, 국고보조금의 지원 규모 및 시기는 예산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 연차별 사업비 구성 >

	2023	2024	2025	2026
국고보조금 (억원)	10	10	90	30
지방비 (억원)	3	29	49	49
충청북도(억원)	1.5	14.5	24.5	24.5
청주시(억원)	1.5	14.5	24.5	24.5
민 자 (억원)	2.5	2.5	2.5	2.5

③ 주관기관은 사업비(국고보조금, 대응자금)에 대하여 별도의 회계 처리를 해야하며, 관련 서류 보존기간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야 한다.

④ 주관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업이 중단 또는 해약된 경우 전담기관은 현장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고,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이하 ‘사업관리지침’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전담기관은 사업비 집행 및 관리와 관련된 규정을 마련하여 주관기관 및 협력기관에 안내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기관과 협력기관은 해당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 (대응자금 관리) ① 협약체결 이후 주관기관은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협력기관에 제출하고 협력기관은 대응자금을 확보하여 전담기관이 지정하는 기한 내에 주관기관에 교부한다.

② 주관기관과 협력기관은 대응자금에 대한 제증명자료(공문, 확약서, 협약서, 납부확인서 또는 이체확인증 등)를 전담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전담조직 구성·운영 등) 주관기관과 협력기관은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전담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전담조직을 구성·운영해야 하며, 전담 업무를 배정해 책임 있게 운영해야 한다.

제6조 (사업수행 및 사업완료) ① 주관기관과 협력기관은 총괄기관 및 전담기관이 승인한 사업계획서의 내용과 일정을 준수하여 사업을 수행 및 운영하여야 한다.

② 주관기관 및 협력기관은 전담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수시보고서를 지정된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관기관과 협력기관은 협약기간 종료시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전담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관련자료 제출 등) 주관기관과 협력기관은 전담기관이 사업과 관련된 자료 제출, 현장 확인, 서류열람 등의 요청이 있을 시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8조 (협약변경) 전담기관, 주관기관, 협력기관은 상호협의를 통해 본 사업의 구축기간 및 협약의 내용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제9조 (협약해약 등) 전담기관은 주관기관과 협력기관이 본 협약을 위반하거나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협약을 해약할 수 있으며, 주관기관 및 협력기관에 대하여 사업관리지침에 의거한 제재 및 환수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부도 등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 이



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주관기관 또는 협력기관이 사업수행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3. 주관기관 또는 협력기관의 천재지변, 자진포기, 등 중대한 사유로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수행이 지연되거나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사업을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협력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전담기관이 지정하는 기한 내 주관기관에게 대응자금 교부를 하지 않은 경우
6. 주관기관이 사업비를 부적정하게 집행 또는 관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주관기관 또는 협력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전담조직 구성·운영을 지체한 경우
8. 주관기관 또는 협력기관이 관련 자료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관련 자료 또는 보고서 제출을 1개월 이상 지체하는 경우
9. 기타 상기 호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제10조 (사업비 정산) ① 사업이 완료된 경우 주관기관과 협력기관은 사업비 정산보고서를 전담기관이 지정하는 기한 내 전담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본 협약을 해약하는 경우 주관기관과 협력기관은 즉시 사업비를 정산하고, 해약 사유에 따라 정부보조금 전액 또는 집행 잔액 등을 전담기관이 지정하는 기한 내 반납하여야 한다.

제11조 (제재) ① 전담기관은 주관기관 또는 협력기관의 제재등급을 심의하는 경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이하 “해당법률”이라 한다)에 따라 사업운영위원회를 통해 환수 및 참여제한 대상여부를 심의하고, 사업관리지침에 의거하여 제재등급을 확정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정부지원금 환수 및 참여제한을 하는 경우 사업관리지침 및 동 협약사항에 따라 조치하며, 제재등급 등이 확정되었을 경우 해당 내용을 주관기관 및 협력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금 환수 시작일은 이의신청이 없을 시에는 전담기관 사업운영위원회 의결일로 하며, 이의신청이 있을 시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전담기관 사업운영위원회 의결일로 한다.
④ 주관기관 및 창업기업의 참여제한 대상사업은 전담기관에서 지원하



는 사업으로 한다.

⑤ 전담기관은 정부지원금의 고의횡령, 편취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협약 기간 종료 전·후를 불문하고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형사고소·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 전담기관은 협약기간 종료 전·후를 불문하고, 동조 제2항의 조치 시 해당 행위에 협조한 관련업체의 정부지원금 집행기업(거래처)에 대해서도 함께 수사의뢰, 형사고소·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사법기관을 통해 범죄행위가 확정되었을 경우 해당 집행기업(대표자)에 대해서는 전담기관의 전 사업의 참여제한 및 관할 세무서 통보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⑦ 사업으로 조성된 건축물 등이 사업목적 외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전담기관은 목적 외 사용으로 발생한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 환수 및 참여제한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 (비밀보장) 전담기관, 주관기관, 협력기관의 구성원은 본 협약 이행과정에서 상대방이 제공하는 모든 정보 및 자료를 사전협의 없이 누구에게도 판매, 복사, 발표, 정보제공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일체할 수 없으며, 구성원 중 어느 일방이 이를 준수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적절한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13조 (사업성과물의 활용 등) 사업성과의 간행물 게재, 홍보 등 대외 발표 시에는 전담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총괄기관의 지원에 의한 사업 결과물임을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제14조 (관계규정의 준수) ① 본 사업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에 의한 사업으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정해진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주관기관은 교부받은 사업비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중소벤처기업부 보조사업 관리규정」, 사업관리지침 등 법률 및 행정규칙, 관리지침을 준수하여 집행·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전담기관은 심의를 통해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관계법령 또는 관리지침이 변경되는 경우 주관기관과 협력기관은 변경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5조 (중요재산의 관리) ①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사업 완료 후에도 「보조금법」과 「보조금법 시행령」에 따른 처분 제한을 받는다.

② 주관기관은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해야 하며, 변동현황을 전담기관에 보고하고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사전에 전담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 (성과의 공유) ① 주관기관 및 협력기관은 완성된 인프라의 활용 실적 및 입주현황 등 사업의 성과를 전담기관에 지속적으로 공유하여야 한다.

② 주관기관 및 협력기관은 인프라 구축 완료 이후 10년간 전담기관에 운영 성과 및 현황 등에 대한 성과보고서를 매년 제출하여야 하며, 그 이후에는 전담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은 주관기관 또는 협력기관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성과활용실적이 부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관리지침에 의거하여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7조 (민원) 주관기관과 협력기관은 본 사업의 협약 또는 운영기간 동안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18조 (안전) 주관기관과 협력기관은 사업수행시 안전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관련 법령 또는 지침에 의거하여 입주기업 등에게 안전교육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내진·방화 등의 안전을 위한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19조 (기타) ① 전담기관은 혁신기술 제조창업 공유공장의 효율적인 구축 및 운영을 위해 관리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주관기관 및 협력기관은 설계변경 등 사업계획의 중대한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전담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혁신기술 제조창업 공유공장은 자율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주관기관 및 협력기관은 자율 운영을 위한 예산 확보 및 운영 계획을 마련하여 총괄기관 및 전담기관에 그 계획을 제출, 이행하여야 한다.



제20조 (해석) 본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 및 본 협약 내용에 대한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는 관계법령 및 총괄기관, 전담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제21조 (협약의 효력) 본 협약서는 전담기관, 주관기관, 협력기관이 각 1부씩 보관하고 협약서의 효력은 협약 당사자 간에 서명·날인한 날로부터 유효하다.

2025년 02 월

전 담 기 관 : 창업진흥원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집현중앙7로 16, 창업진흥원
대 표 자 : 직무대행 최 열 수 (인)

주 관 기 관 : (재)충북테크노파크
주 소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연구단지76
대 표 자 : 오 원 근 (인)

협 력 기 관 : (재) FITI 시험연구원
주 소 :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8로 3길 79
대 표 자 : 윤 주 경 (인)

협 력 기 관 : (재)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주 소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생명1로 19425 청주SB플라자 2층
대 표 자 : 홍 성 표 (인)

협 력 기 관 : 충청북도
주 소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82
대 표 자 : 김 영 환 (인)

협 력 기 관 : 청주시
주 소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69번길 38
대 표 자 : 이 범 석 (인)

「2025년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

업 무 협 약 서

청주시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원회”)는 「2025년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상호 우호와 신뢰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업무 위수탁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서는 「2025년 청년문화예술패스사업」 추진을 위해 예술위원회와 청주시 간 상호 협력의사 및 협력사항을 분명히 공유하고 이에 필요한 기본 방향 및 세부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협약에 사용할 용어는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1.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5년 기준 대한민국 19세 청년(2006년 출생자)이 예술 분야의 공연·전시를 관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 사업기간 : 2025. 1. 1. ~ 2025. 12. 31.(관람일 기준)
 - (1차 발급기간 : 2025. 3. 6. ~ 5. 31. / 2차 발급기간 : 2025. 7. 7. ~ 11. 30.)
 - 청주시 청년 지원대상 인원 : 2,848명
 - 청주시 청년 지원금액 : 1인당 15만 원(국비 10만 원, 지방비 5만 원)
2. ‘협력예매처’는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에 참여하기로 결정된 관람권 판매 시스템을 갖춘 업체를 말한다.
3. ‘지원금’이란 이 사업의 지원대상이 되는 청년에게 지급되는 관람권 구입의 결제수단으로서 지원 대상자가 선택한 협력예매처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포인트 또는 상품권의 형태로 지급된다.

제3조(업무절차 및 내용)

- ① 청주시는 확보된 지방비 예산을 최대한 2025.2.28.까지 예술위원회로 위탁 하되, 불가피한 경우 늦어도 1차 발급 마감기간인 2025.5.31.까지 위탁하여야 한다.
- ② 예술위원회는 청주시로부터 사업비를 수탁하여 관리·운영하며, 청년문화 예술패스 누리집을 통해 신청한 청주시 거주 청년에게 선택한 협력예매처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원금을 지급한다.

- ③ 예술위원회는 청주시가 이 사업의 운영과 현황 관리에 필요한 홍보·통계 자료를 주기적으로 제공하고 청주시는 홍보 추진계획 및 실적 제출에 있어 적극 협력한다.
- ④ 예술위원회는 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 청주시에 수탁 사업비 정산보고서 제출과 함께 집행잔액 및 이자에 대한 반납을 완료한다. 단, 정책변경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연장된 종료일을 최종 종료일로 본다.

제4조(협약기간) 본 약정의 유효기간은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이 종료된 후 2개월까지로 하며,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 종료 이후에는 협약 업무 범위를 정산보고서 제출, 사업비 정산과 사업관리에 필요한 자료 제공 업무로 국한한다.

제5조(비밀유지)

- ① 각 당사자는 본 협약의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상 정보 및 비밀 일체를 상대방의 사전 승인 없이 협약 대상 사업과 업무 추진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외부로 노출할 수 없다.
- ② 예술위원회로부터 제공받는 지원 대상자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이용 목적 외의 사용은 불가능하며, 해당 사업년도의 사업기간 만료 시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

제6조(기타) 이 협약서에 명시된 내용 이외의 사유로 발생하는 이견이나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 간 별도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7조(분쟁의 해결) 본 협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최대한 협의를 통해 해결을 모색하되, 합의가 되지 않고 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본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각 기명날인한 후 1부씩 보관한다.

2025년 2월 11일

청주시
CHEONGJU
CITY

청주시장
이 범 석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정 병 국

